

김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4 -47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4. 6.

제안자 : 임영택의원의외인

1. 개 정 이 유

-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김제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김제시민의장 수여대상자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수상의 영예성을 한층 높이고자 함.

2. 주 요 내 용

- 추천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신설
 -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(제6조의2 제3호)
 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(제6조의2 제4호)
- 수상자의 격을 높이기 위하여 “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”를, “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” 개정 (제7조)

3. 참 고 사 항

-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
- 김제시민의장조례

김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민의장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

4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
제7조 중 “과반수”를, “3분의 2 이상”으로 한다.

— 부 칙 —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의2(추천제외대상) (생략) 1~2. (생략) (<u>신설</u>)</p> <p>제7조(수상자결정)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,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의2(추천제외대상) (현행과 같음) 1~2. (현행과 같음) 3. <u>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</u> 4. <u>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</u></p> <p>제7조(수상자결정) ----- ----- <u>3분의 2 이상</u> ----- ----- -----</p>